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10. 6.

# 2023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153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출연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 출연기관: (재)논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 지진호)
-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 재단설립: 2021. 11. 1. (등기일)
- 출 연 금: 총 2,513,683천원
  - ※ 2022년 예산 : 2,356,627천원
  - 논산문화관광재단 운영(인건비 등 운영비) 및 사업비
- 예산확보: 2023년 본예산
-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계	<b>2,513,683</b>	<b>1,560,150</b>	<b>938,533</b>	<b>15,000</b>	
재단운영	2,498,683	1,560,150	938,533	-	
문화관광진흥 추진단 운영	15,000	-	-	15,000	

### 3. 주요사업

- 국가, 충청남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 논산시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그 동안 추진사항

- 2022. 1. : 재단 출범, 위·수탁협약(아트센터, 선샤인랜드), 공무원과견
- 2022. 3. : 대표이사 취임
- 2022. 5. : 위·수탁협약(강경산 소금박물관)
- 2022. 6. : 위·수탁협약(논산한옥마을)
- 2022. 6. : (재)백제문화재단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2022. 6. :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업무협약(MOU) 체결
- 2022. 6. : 지역맞춤형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선정
- 2022. 7. : 충청남도 문화재단 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
- 2022. 7. :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논산문화원 업무협약(MOU) 체결

- 2022. 7. : 충남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22. 8. : 논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위촉
- 2022. 8. : 한국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 선정
- 2022. 10. : 위·수탁협약(연산문화창고)

5. 위·수탁 시설현황: [붙임 1]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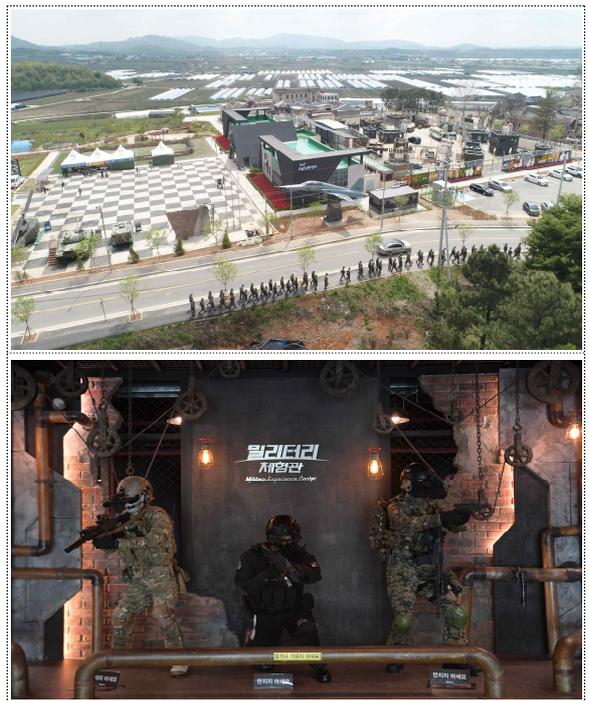
**1. 논산아트센터**

- 위 치: 논산시 시민로 270
- 개관일: 1985. 11. 19.
- 규 모: 연면적 2,615㎡(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대공연장(560석), 소공연장(169석)
- 운영 및 관리수탁
  - 수탁기간: '22. 1. 10. ~ '27. 1. 9. (5년간)
  - 출 연 금: 185,696천원
  - 내 용: 아트센터 대관 공연기획 및 유치 등
-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공연축제팀



**2. 선샤인랜드**

- 위 치: 연무읍 봉황로 102
- 개관일: 2018. 11. 7.
- 규 모: 연면적 33,023㎡
- 주요시설
  - VR체험장, 서바이벌체험장, 실내스크린 사격장 등
- 운영 및 관리 수탁
  - 수탁기간: '22. 1. 10. ~ '27. 1. 9. (5년간)
  - 출 연 금: 575,737천원
  - 내 용: 선샤인랜드 관리, 운영
- 관련부서: 관광과 관광진흥팀



### 3. 강경산 소금박물관

- 위 치: 강경읍 강경포구길 38
- 개관일: 2021. 12. 27.
- 규 모
  - 대지 2,928㎡, 연면적 957.4㎡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전시관, 체험공방
- 운영 및 관리 수탁
  - 수탁기간: '22. 5. 16. ~ '27. 5. 15(5년간)
  - 수탁금: 118,500천원(공기관위탁사업비)
  - 내 용: 문화예술 활동 체험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4. 논산한옥마을

- 위 치: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
- 개관일: 2022. 09. 01.(예정)
- 규 모: 대지 3,492㎡, 연면적 1,371㎡
- 운영 및 관리 수탁
  - 수탁기간: '22. 5. 30. ~ 12. 31.(7개월)
  - 수탁금: 500,000천원(공기관위탁사업비)
  - 내 용: 한옥 숙박 체험 및 문화행사 향유공간
- 관련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5. 연산문화창고(예정)

- 위 치: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31번길 28
- 개관일: 2022. 03. 24.
- 규 모: 대지 3,796㎡, 연면적 1,714㎡
- 주요시설
  - 1동: 담쟁이 예술학교(면적273㎡, 스튜디오2)
  - 2동: 커뮤니티홀(면적95㎡, 커뮤니티룸3, 술공방1)
  - 3동: 카페(면적 886㎡)
  - 4동: 다목적홀(면적360㎡, 다목적홀1)
- 운영 및 관리 수탁
  - 수탁기간: 2022. 10. 1
  - 수탁금: 132,000천원(공기관위탁사업비)
- 관련부서: 관광과 관광기획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